

[상세보기 #7] 채용 우대사항 및 가산점 부여 자격증 내역

□ 채용 우대사항

구분	대상	해당자	가 산 점 수	
특별 우대 가산점	취업지원 대상자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	서류, 필기, 면접전형 등 각 전형별 만점의 5% 또는 10% 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해당하는 가점 적용)	
	장애인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장애인	서류, 필기, 면접전형 등 각 전형별 만점의 5%, 중증장애인은 서류전형 만점의 5%를 추가 가산	
	국민기초 생활수급자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의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	서류전형 만점의 5%	
	북한이탈주민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북한이탈주민	서류전형 만점의 5%	
	다문화가족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의 다문화가족	서류전형 만점의 5%	
	자립준비청년 (보호종료아동)	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(단,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」에 따른 '청년'에 한해 적용)	서류, 필기, 면접전형 등 각 전형별 만점의 5%	
일반 우대 가산점	공통	고급자격*, 지원분야 기술사[상세보기 #3]	서류전형 면제, 필기전형 만점의 10%, 면접전형 만점의 10%	
	직무별	주거복지 관리	사회복지사 1·2급, 주거복지사(국가공인), 주택관리사(보), 공인중개사	필기전형 만점의 3% (사회복지사(2급)는 2%)
		시설관리· 하자보수	필요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	기사이상 : 필기전형 만점의 3% 산업기사 : 필기전형 만점의 2%
		승강기 관리	필요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	기사이상 : 필기전형 만점의 3% 산업기사 : 필기전형 만점의 2%
		건설사업 지원	필요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	기사이상 : 필기전형 만점의 3% 산업기사 : 필기전형 만점의 2%

※ 적용기준

- 가산점은 공고일 ('24.5.14.) 이전 취득한 자격(합격일자 기준)에 한해 인정
- 특별우대 가산점은 지원서에 모두 기재하고, 가산점은 해당 전형단계별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하며, 취업지원대상자가 모집분야 내에서 일반지원자와 경쟁하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또한, 동점자 발생 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한다.
- 일반우대가산점은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한다.
- 특별우대가산점과 일반우대가산점은 각각 인정하여 합산한다.
- 서류전형 면제자의 경우라도 작성한 자기소개서는 면접에 활용될 예정으로,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, 블라인드 위반 시 면접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* 고급자격 목록(발행처) : 한국공인회계사(금융감독원), 공인노무사(고용노동부), 세무사(국세청), 변호사(법무부), 법무사(법원행정처), 감정평가사(국토교통부), 국제재무분석사(CFA) 3차 합격자(CFA Institute)